우석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

제정 2023.02.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전라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 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위원회)

- 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 ①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 ②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교육과정부장, 각 교과 대표(국어·한문, 외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예체능, 생활·교양)로 한다.

나. 역할

- 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및 방향 설정
- ②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③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점검 및 연수 지원
- ④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
- ⑤ 기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
- 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년 협의회'를 자문기구로 두어, 필요에 따라 각 조직의 대표를 위원회의 협의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과정 편성 절차)

- 가. 교육과정 편성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의 각항과 같다.
 - ① 구성원 대상 의견수렴
 - ② 학교 교육과정 편성 기본 계획 수립
 - ③ 학생 진로·적성 검사의 실시
 - ④ 진로 및 학업 설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⑤ 학생 개별 학업계획 수립
 - ⑥ 학생 대상 과목선택 수요조사
 - ⑦ 교사별 과목 개설 신청
 - ⑧ 과목 수강 신청 및 조정
 - ⑨ 수업 운영계획 수립

- ⑩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확정
- 나. 교육과정 편성에 앞서, 구성원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 다. 학교의 여건 및 구성원 요구를 반영하여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시행한다. 교육과정 편성 기본 계획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안을 포함한다.
- 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 대상 진로·적성 검사를 운영하여, 학생 진로 및 학업 설계를 위한 상담 및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마. 학생의 진로 구체화와 진로·적성·흥미에 따른 학업 설계 지원을 위한 상담 활동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 학업 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 ①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 ② 교육과정 교과목 안내
 - ③ 이수 권장 과목
 - ④ 진로 및 진학 관련 안내
 - ⑤ 수요조사 및 수강 신청의 절차와 방법
- 바. 상담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수 희망과목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학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 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수 희망과목과 시기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과목 개설 범위의 설정 및 교사의 과목 개설 신청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음 학년도 개설 희망과목 신청을 받은 후, 교과별 협의와 교육 과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수강 신청 대상 과목을 결정한다.
- 자. 다음 학년도 개설 예정 과목을 대상으로 과목 수강 신청을 진행하여 최종 개설과목을 결정한다. 이때, 학생 선택 결과와 학교 여건에 따라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과목선택 변경을 위한 조정 기간을 두어 운영한다.
- 차.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학년도의 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수업 운영계획은 수업 시간표의 운영, 분반의 편성, 이동 수업 계획, 순회 지원 요청, 교원 정원 조정, 공강 발생에 따른 학생지도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카. 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 배당을 확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11월 말까지 보고한다. 이후 교육과정 편제의 변동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보고한다.

제4조(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학교 교육과정의 편제 및 단위 배당에 관한 사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전라북도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구성원 의견수렴, 교과별 협의, 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 나. 학생의 수업·평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교육 활동의 운영을 위해 **학기당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과목 수를 8개 과목 이내로 편성**한다. 이때,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교양 교과목, 진로 선택과목, 실기·실습 과목'은 8개 이내의 과목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통해 예외로 편성할 수 있다.
- 다. 선택과목은 학기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의 과목을 최소 4 단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과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로 편성할 수 있다.
- 라. 학생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선택 영역을 교과(군) 간, 교과 영역 간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 마. 선택과목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과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택과목을 학교 지정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바. 교육과정 상 위계성이 있는 과목은 해당 교과(군)에 공통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 과목에 우선하여 편성하며, I 과 Ⅱ로 구분된 과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I을 이수한 후 Ⅱ를 이수하도록 편성한다. 수학 교과의 경우, '수학 I'과 '수학 Ⅱ'를 이수한 후 '미적분'을 이수하도록 편성하며, 전문 교과를 운영할 때는 교육과정 상의 위계에 따라 과목을 편성한다.
- 사. 기타 이 사항에 규정하지 않은 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 배당에 관한 사항은 교과별 협의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처리한다.

제5조(과목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은 정규 수업시간 내에 개설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과목 개설을 위한 학생 최소 선택인원 기준은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5%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 교원 정원 및 시수등의 여건을 고려해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선택한 과목 중, 학교 여건상 운영이 어려운 과목은 교과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 나.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이 선택한 과목 중 개설이 어렵거나, 기준 미만의 학생이 선택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에 따라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목은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보충과정, 소인수 선택과목 등의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 다. 학생 대상 과목선택 수요조사는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 ① 수요조사는 진로 및 학업 설계 프로그램의 종료 이후, 과목 수강 신청 운영 전에 실시한다.
 - ② **학년도 내에 최소 2회 이상의 수요조사**를 하되, 회차에 따라 범위를 좁혀가며 실시한다(예시: 2·3학년 → 2학년 → 2학년 1·2학기 과목의 순).
 - ③ 온라인 조사나 수기 입력 등의 다양한 조사 방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한다.
 - ④ 수요조사 결과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⑤ 수요조사의 결과를 과목 개설의 결정에 반영할 때는 위의 '가' 항의 학생 최소 선택 인원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교과별 협의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처리한다.
 - ⑥ 수요조사의 종료 이후, 과목선택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은 학급 담임 및 교과 담임 교사를 중심으로 한 상담 활동을 통해 과목 선택을 조정하도록 지도한다.
- 라. 수요조사의 결과를 공개한 이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과목 개설 신청 희망 조사를 시행한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위원회는 최종 수요조사의 결과와 교사의 과목 개설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수강 신청 대상 과목을 결정한다.
- 마. 학생 대상 과목 수강 신청은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 ① 수강 신청의 시기는 교과서 주문이나 교원 정기인사 등의 일정을 고려해 결정한다.
 - ② 수강 신청은 다음 학년도 개설 예정 과목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 ③ 수강 신청은 온라인이나 수기 입력 등의 다양한 방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한다.
 - ④ 수강 신청 결과에 따른 과목 개설은 '가' 항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르되, 과목의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은 교과별 협의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
 - ⑤ 수강 신청을 실시하여 10월 말까지 학생의 '최종 확인'을 완료하고, 교과서 주문, 시간표 작성, 교원 수급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수강 신청 완료 이후, 과목별 수강 신청 결과(과목별 인원)을 공개하고, 수업일수 기준 7일 이상을 조정 기간으로 두어, 변경을 희망하거나 미개설 예정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로부터 변경 신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단,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급 담임, 교과 담당교사 등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수강 신청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 1) 수업 시간표나 학급 편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2) 교육과정편제표 외 새로운 과목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 3) 단순한 교우 관계, 교사에 대한 선호에 따른 경우
 - 4) 기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⑥ 과목의 수강이 시작된 이후에 과목 수강의 변경을 요구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 변경을 이유로 요청할 경우 매 학기초 10일 이내까지만 허용하도록 하며, 이후 과목 변경은 해당 학기 종료 이후에 가능하다. 학급 담임 교사는 학생·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수강 과목 변경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를 받아 다음 학기부터 수강 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급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 등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수강 신청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 1) 수업 시간표나 학급 편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2) 교육과정편제표 외 새로운 과목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 3) 단순한 교우 관계, 교사에 대한 선호에 따른 경우
 - 4) 기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바. 수업 운영계획의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항의 내용을 고려한다.
 - ① 수업 운영계획은 교원 정원 등의 인사 요인이 확정된 학년 말에 수립한다.
 - ② 30명 이상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은 반을 나누어 운영하되,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 담당교사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학급 편성과 분반의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과목은 이동 수업으로 운영한다.
 - ④ 이동 수업 담당 교원의 결강 사유 발생에 따른 보강 수업은 공강 시간에 운영한다.
 - ⑤ 학점제의 시행 등에 따른 공강(수요일 6교시, 목요일 6교시)에 관한 사항을 별도 계획에 근거해 운영한다.
- 사. 제5조 '나'항에서 소인수 선택과목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인수 선택과목을 설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 1) 희망학생이 소인수여서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 2) 공동교육과정, 온라인보충으로 개설되지 않아 신청이 어려운 경우
 - ② 학년 말에 수강 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해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변명될 때에는 다음 원칙에 따라 개설을 결정한다.
 - 1) 다수 학생이 선택한 수강 교과목을 우선 개설한다.
 - 2) 학생의 진로 역량 제고에 효과적인 교과목을 우선 개설한다.
 - 3) 교원 수급, 시설 여건, 시간표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년 말에 과목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④ 소인수 선택과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수강 과목 변경 포기'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부칙

- 가. 본 규정은 전체 교사 대상 의견수렴과 교과별 협의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통해 개정한다.
- 나. 본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강 과목 변경 신청서				
학번		이름		
기존		변경		
수강 신청 과목명 수강 신청 과목명				

【 변경 사유 - 학생 또는 보호자 작성 】

담임교사	하시 미 하Hn이 ㅊㅂ늰 샤다해 ♡	담임교사명	서명 또는 인
확인란	학생 및 학부모와 충분히 상담했음.		
교과 담임교사	원제 제라 가입 미 내가 지워 이네워	확인교사명	서명 또는 인
확인란	학생 상담 진행 및 변경 절차 안내함.		

위와 같은 사유로 수강 과목을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학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우석고등학교장 귀하

동 의 서

【수강 과목 변경 유의사항】

유의사항	학생	학부모
과목 변경 신청은 매 학기초 10일 이내까지만 되며, 이후 과목 변경은 해당 학기 종료 이후에 가능합니다.		
과목 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교과서는 개인이 외부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과목별 수강반 수와 수강자 수에 따라 선택과목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유의사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면 확인란에 '√'표시합니다.

【수강 과목 변경 신청】

기존 수강 신청 과목명	변경 수강 신청 과목명

【수강 과목 변경 유의사항】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였습니다. 수강 과목 변경 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학생 및 학부모 연서로 서명 날인(또는 사인)합니다.

20 . . .

학생 : (인 또는 사인)

보호자 : (인 또는 사인)

우석고등학교장 귀하

서 약 서

【수강 과목 변경】

기존 수강 신청 과목명	변경 수강 신청 과목명

【수강 과목 변경】을 확인하였고, 변경된 과목 수강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며, 수강 과목 변경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학생 및 학부모 연서로 서명 날인(또는 사인) 합니다.

20 . . .

학생 : (인 또는 사인)

보호자 : (인 또는 사인)

우석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4]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신청서 양식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신청서

1. 신청 과목

7.7/7)	유형	학년		
교과(군)		1학기	2학기	
예) 국어	진로선택	심화 국어		

2. 신청학생 명단(※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최소 인원은 3명 이상임)

순	학번	이름	순	학번	이름
1			9		
2			10		
3			11		
4			12		
5			13		
6			14		
7			15		
8			16		

20 . .

신청 학생 : (인 또는 사인)

학년 부장 : (인 또는 사인)

교육과정부장 : (인 또는 사인)

[서식 5] 회의록 양식

위원회명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안건	-		
내용	_		
결정사항	-		
비고			

